

	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		문서번호		4-1-8	
			제정일		2019. 04. 12.	
			개정일		2020. 11. 01.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진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범위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 진로설계와 교육 및 지원
2. 진로검사 및 개인상담, 집단상담 등 진로상담 업무
3. 졸업생 지원에 관한 업무
4. 기타 관련 업무

제3조(조직) 본 센터는 센터장, 운영위원회, 직원으로 구성된다.

제4조(센터장)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에는 운영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④ 직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	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4-1-8		
		제정일	2019. 04. 12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